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종합감사 결과

## 1.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9. 10. 7. ~ 10. 18.(9일 간)
- 감사반 : 감사담당관 등 6명
- 대상기관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감사내용
  - 조직·인력·복무관리 등 기관운영 실태
  - 예산편성·집행 및 계약 등 회계업무 적정성
  -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추진 실태
  - 문화예술교육 정책 기반 조성 사업 추진 실태
  - 문화예술교육 정보화 및 종합정보서비스 운영 실태

## 2. 감사결과

(단위: 건, 명)

합계			징계 (인원)	시정 (금액)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수사 요청	현지 조치
건수	금액	인원						계	일반	인사 (인원)	모범 사례 (인원)		
25		3			9 (3)			9	9				7

### 3. 감사처분 요구 내용

연번	지 적 내 용	조 치 요 구 사 항
1	<p>○ 채용 업무(보훈가점 부여) 처리 부적정</p> <p>- 직원채용기준을 마련하면서 「국가유공자법」상 보훈가점 기준과 다르게 가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정함에 따라, 최근 4년 간 진흥원 채용에 지원한 취업지원대상자 59명의 보훈가점을 잘못 부여</p>	<p>○ 주의/통보</p> <p>- 보훈가산점 부여 등 채용업무 철저히 하고 담당직원(3명) 주의조치</p> <p>- 채용업무 지침 개정 방안 마련</p>
2	<p>○ 교육기자재 관리업무 부적정</p> <p>- 2016년 이후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원하는 문화 예술 교육기자재에 대한 정기현물조사를 한 번도 실시 하지 않는 등 교육기자재 관리업무 소홀</p>	<p>○ 주의/통보</p> <p>- 현물조사, 관리대장 작성 등 교육기자재 관리업무를 철저히</p> <p>- 종합적인 교육기자재 관리 방안 마련</p>
3	<p>○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양성 사업 추진 부적정</p> <p>- 「아르떼 아카데미(전문인력 양성사업) 연수 규정」을 제·개정하면서 원장의 결재 없이 팀장 또는 본부장의 위임전결로 부당 처리 하거나, 「위원회 운영규정」과 「아르떼 아카데미 연수규정」의 강사료 지급기준이 달라 동일 강의시간 대비 지급되는 강사료에 차이 발생 등 강사료 지급기준 명확화 필요</p>	<p>○ 주의/통보</p> <p>- 관련 규정의 제·개정 시 원장의 결재 등 관리 철저히</p> <p>- 명확한 강사료 지급기준 마련</p>
4	<p>○ 인건비 책정 등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추진 부적정</p> <p>- 2011년부터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 교육지원센터(지역 문화재단)를 통해 추진하던 사업 방식을 2017년 공모방식으로 전환 시 인건비 지원범위를 총 보조액의 10% 이내로 임의산정하여 인건비의 대폭 증가(5배 이상)를 초래하거나, ‘재정지원일자리사업’상 학교예술강사 고용 지침(만 34세 이하 고용비율 50% 이상, 취약계층 고용비율 10%) 미준수</p>	<p>○ 주의/통보</p> <p>- ‘재정일자리사업지침’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p> <p>- 보조사업의 업무량 등을 고려한 인건비 지원 기준 마련</p>

연번	지 적 내 용	조 치 요 구 사 항
5	<p>○ 국외출장비 등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p> <p>- ①현지교통비 지급기준을 여비규정에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채, 일비에서 집행해야 하는 도시권내 교통비를 현지교통비 명목으로 지급(11건, 1,834,308원), ②연장근로수당(1명, 88,560원) 및 복지포인트(2명, 550포인트) 초과 지급, ③23시 이후 심야시간에 법인카드 12건(1,034,400원) 사용 등 예산 집행 부적정</p>	<p>○ 주의/통보</p> <p>- 세출예산집행지침을 철저히 준수</p> <p>- 부당지급분에 대한 환수방안 및 관련 규정 개정방안 마련</p>
6	<p>○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연구용역 계약업무 부적정</p> <p>- ①경쟁입찰 대상인 신규사업(‘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관리시스템 구축·개선’ 사업 등)을 기존 ‘정보시스템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의 변경 계약으로 부당 추진, ②3천 만 원 초과 연구용역의 예정가격 미작성, 경쟁입찰 대상 연구용역을 수의계약 체결, 2인 이상 견적 비교·검토 미실시, ③연구용역 공모에 1인 참가 시 재공고 없이 계약 체결(14건, 1,023백만 원), ④사업자가 아닌 진흥원 자문·심사위원 등 개인과 연구용역 계약 체결 등(36건, 469백만 원)</p>	<p>○ 주의/통보</p> <p>- 정보화사업 및 연구용역 추진 중 계약법규 등을 철저히 준수</p> <p>- 계약법규에 맞도록 계약매뉴얼 개정방안 마련</p>
7	<p>○ 본부장급 직원의 출·퇴근 시간 미등록 등 복무관리 부적정</p> <p>- 2016년 4월 도입한 근태관리시스템에 본부장급 직원(6명)은 출·퇴근 시간 미등록 등 직원의 복무관리 소홀</p>	<p>○ 주의</p> <p>- 본부장급 직원에 대한 복무 관리 철저</p>
8	<p>○ 계약업무 부적정</p> <p>- ①협상에 의한 계약 시 입찰공고기간 위반(58건, 전체 대비 36%), ②계약금액 1천만 원 초과 계약 409건(36,416백만 원)의 수입인지 미징구(19백만 원), ③법령 상 계약보증금 부과대상인데도 납부면제(13백만 원) 등 계약업무 소홀</p>	<p>○ 주의</p> <p>- 계약업무 수행 시 계약법규에서 정한 절차 및 의무를 철저히 준수</p>
9	<p>○ 정보보안 관리업무 부적정</p> <p>- ①정보화사업의 보안성 검토 누락, ②내부망에 외부인 접근 통제 미실시, ③개인정보 등에 대한 보안 조치 미흡 등 정보보안 관리업무 소홀</p>	<p>○ 주의</p> <p>- 외부인 접근 통제 등 정보보안 관리업무 철저</p>

연번	지 적 내 용	조 치 요 구 사 항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책수당 수급자(팀장급) 연장근로수당 지급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책수당(월 40만 원 내외) 지급대상인 팀장급 관리자에게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개선 필요</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장근로수당 관련 규정 개정방안 마련</li> </ul> </li> </ul>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근속자 특별휴가제도 운영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등에 따르면 업무실적 및 성과가 있는 장기근속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나, 근속연수만을 기준으로 특별휴가 부여(70명, 272일) 등 복리후생제도 운영 부적정</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근속자 특별휴가 제도 개선방안 마련</li> </ul> </li> </ul>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운영(인사, 복무, 회계 등) 관련 규정 개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겸직허가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채 직원 2명(단장, 본부장)의 겸직허가를 외부장의 신고만으로 대체, ②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성범죄·음주운전자의 징계감경금지 및 징계양정기준 규정 미마련, ③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재량적 휴직제도 운영, ④퇴직급여충당금을 운용기준 없이 특정은행에 장기간 예치</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겸직허가기준 등 기관 운영 관련 규정 등 제 개정 방안 마련</li> </ul> </li> </ul>

※ 현지조치 사항(7개 처분) : ①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전파 및 특별교육 실시(현지시정), ②정산 완료 후 납부고지 시 까지 발생한 이자(17,880,942원) 반납(현지시정), ③승진임용예정자의 범위를 규정에 맞게 축소(10배수→3배수) 운영(현지시정), ④현금구매 직접계약 방식 관련 규정 개정(현지시정), ⑤설·추석 명절기간 중 복무관리 철저(현지주의), ⑥인사위원회 회의록 보존관리 및 질병휴직 관리 철저(현지주의), ⑦예산범위 및 정원을 감안한 승진인원 산정 등 인사업무 철저(현지주의)